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8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2.

발 의 자 : 박성중 · 김형동 · 강대식
정우택 · 허숙정 · 이종성
하영제 · 김영식 · 金炳旭
장제원 · 홍석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업 정보 유출, 웹변조,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.

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침해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, 현행법상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

치 권고 또는 명령,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,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,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함(안 제48조의3, 제76조).
- 나.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, 이행여부 점검,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,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48조의4, 제76조).
- 다.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(안 제48조의4).

라. 신속한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의 원인조사, 대책마련, 조치 이행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(안 제48조의4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“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”를 “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알게 된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침해사고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4제2항 중 “권고할”을 “권고하거나 명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48조의4제6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”를 “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”로, “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”를 “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”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3항에 따른”을 “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

2.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

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, 제3항에 따른 이행 점검,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3조제6호 중 “제48조의4제4항”을 “제48조의4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5.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제76조제3항제11호의2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의3 중 “제48조의4제5항”을 “제48조의4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제48조의4제5항”을 “제48조의4제6

항”으로 한다.

11의4. 제48조의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
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	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<u>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	① ----- <u>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알게 된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<u>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침해사고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</u>

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,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-----

----- 제4항 -----

1.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

2.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

⑦ -----

----- 제6항 -----

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, 제3항에 따른 이행 점검,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

⑦ 제3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의 구성·운영,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1의2. 삭제
2. ~ 5. (생략)
6.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
7. ~ 8. (생략)

제76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삭제
- 4의2. ~ 4의4. (생략)

<신설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홍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·

절차, 제4항에 따른 -----

----- 제6항-----

-----.

제73조(벌칙) -----

-----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48조의4제5항-----

7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7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4의2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
4의5.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

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

아니한 자

③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·2. 삭 제 2의2. ~ 11. (생 략) 11의2.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3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<신 설> 12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. ~ 25. (생 략) ④ (생 략)	----- -----. 2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11의3. 제48조의4제6항----- ----- ----- 11의4. 제48조의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. 제48조의4제6항----- ----- ----- 12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